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옥재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5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옥재은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규남,
김용호, 김원중, 김재진,
김지향, 김태수, 김현기,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
문성호, 서호연, 윤종복,
이봉준, 이상욱, 이종환,
임춘대, 최민규, 허 · 훈
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「주택법 시행령」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공공주택 중 ‘소형 임대주택’의 정의를 재정비하고,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주택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유형이 개편됨에 따라, 소형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의 정의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여 내용상 종전과 동일한 정의를 유지함(안 제2조제1호마목).
- 나. 임대주택 용적률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던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, 그에 맞춰 인용 조문을 정비함(안 제12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주택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·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마목 중 “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 중”을 “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으로서”로 하고, 같은 목에 1) 및 2)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)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

2)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

제12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5조제14항”을 “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1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서울공공주택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. 가. ~ 라. (생략) 마.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주택 중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(이하 “소형 임대주택”이라 한다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바. (생략) 2. (생략) 제12조(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)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시 추가로 허용하는 용적률에 관하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.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마.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으로서 ----- ----- ----- ----- 1)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)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바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제12조(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) ----- ----- -----

여는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5조제14항을 따른다.

---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1조제1항-----.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조제1호마목의 1) 및 2)를 추가하여 소형주택의 요건을 신설하고, 그 외에는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